

# 종중태산장학회 규정

제정 2010. 02. 10

개정 2012. 02. 26

개정 2013. 02. 24

개정 2014. 03. 02

## 제1장 총칙

**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경주최씨준운공후손 종중 규약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종원의 자 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을 지원키 위한 기금과 종중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- ① 본 규정은 종중 규약 제5조(회원의 자격) 및 규약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를 다 하고 있는 종원의 후손에게 적용한다.
- ② 종중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장학금 의 종류)**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비 보조금
2. 수학 보조금
3. 입학 보조금
4. 특별 장학금
5. 근로 보조금
6. 우수 장학금

### 제4조(장학금의 지급 규정)

- ① 학비 보조금은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장학금을 말하며,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수학 보조금은 가계가 곤란한 소년, 소녀 가장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매년 1 인을 선정하여, 월별 또는 분기별로 생활비를 보조 지급 하는 장학금을 말하며, 대상

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③ 입학 보조금은 초등, 중등, 고등, 대학교(2년제 포함) 신입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 축하금을 말하며,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장학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④ 특별 장학금은 우수 대학 (서울대학교, 연세대학교, 고려대학교, 포항공과 대학교, 한국과학기술대학교)에 입학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격려금이며,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⑤ 근로 보조금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⑥ 우수 장학금은 경주최씨준운공후손 종친 자녀 중 중, 고, 대학교 재학생이며 전년도 학교성적이 상위 10%내 학생에게 지급한다.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사업)

- 1. 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
- 2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

#### 제6조(기금)

- ① 기금은 종중 규약 제2조(목적) 및 제4조 ④항(회원자녀의 육성과 장학사업)의 시행을 위한 종중 규약 제43조 ②항에 의한 (태산빌딩의 특별회계 영업 잉여금 중 일부의 전용) 재원과 종원의 기탁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- ② 기금은 본 규정에서 정한 바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## 제2장 장학 위원회

#### 제7조(장학 위원회의 설치 등)

- ① 종중은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, 총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산장학위원회 (이하 '장학 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중 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되는 약간 명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
3.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제8조(회의 및 의결)

- ① 제7조 ②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된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.

부칙 ( 2010. 02. 10 ) 본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